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26
------	------

2019.12.17.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 제10차 기획경제위원회(2019.12.17.)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 1.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자격 및 권한, 업무처리 방법, 그 밖에 납세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업무, 권한 등(안 제2장)

- (1)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둠(안 제4조)
- (2)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중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음(안 제5조)
- (3) 납세자보호관은 시세와 관련된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6조)
- (4)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세무조사의 일시 중지 또는 중지 요구,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과세 자료 열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음(안 제7조)

### 나. 고충민원의 대상과 처리절차(안 제3장)

- (1) 고충민원은 시장이 결정·처분한 사항, 2개 이상 자치구에 접수된 유사 고충민원 등을 대상으로 함(안 제8조)
- (2)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법령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감사원장 등의 지시에 따른 처분, 고소·고발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9조)
- (3) 고충민원의 신청기한은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 또는 부당 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한 종료일 90일 전까지로 함(안 제10조)

- (4) 고충민원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되, 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안 제11조)
- (5)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의 처리에 대하여 세무부서의 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12조)

다. 권리보호요청의 대상과 처리절차(안 제4장)

- (1) 권리보호요청은 법령을 위반한 세무조사 또는 시세 부과·징수·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대상으로 함(안 제16조)
- (2)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로 함(안 제17조)
- (3) 권리보호요청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되,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음(안 제18조)

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의 처리 절차 등(안 제5장)

- (1) 세무부서의 장 또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안 제19조)
- (2)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개시 3일 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함(안 제21조)
- (3)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또는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20조 및 제22조)
- (4)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없음(안 제20조 및 제22조)

마. 시장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3조)

바.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안 제24조)

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개정을 건의할 수 있음

(안 제25조)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조례안의 개요

-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2017.12.26.)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의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과 권한, 업무처리 방법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되었음.

#### 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도입 경위

-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신속한 권리구제와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도입되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부족, 법률상의 설치의무의 부재 등의 이유로 2017년까지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2곳에 불과하게 되자, 조례상의 임의규정으로 위임했던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법률상의 의무규정으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필수적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토록 하였음.

##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후 비교

종전	개정후
<p>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u>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u>하여야 한다.</u></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u></p> <p>③ <u>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서울시는 납세자보호관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출<sup>1)</sup>하였으나, 합의제행정기관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적인 권한행사가 어렵고,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되었음.
- 이후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국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소송, 행정심판, 법률)에 배치하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편람」(2018.7.)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운영 업무를 ‘법무담당관’으로 조정하고 조례안을 제출하였음.

<sup>1)</sup>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2018.10.17, 시장제출)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편람 >, 4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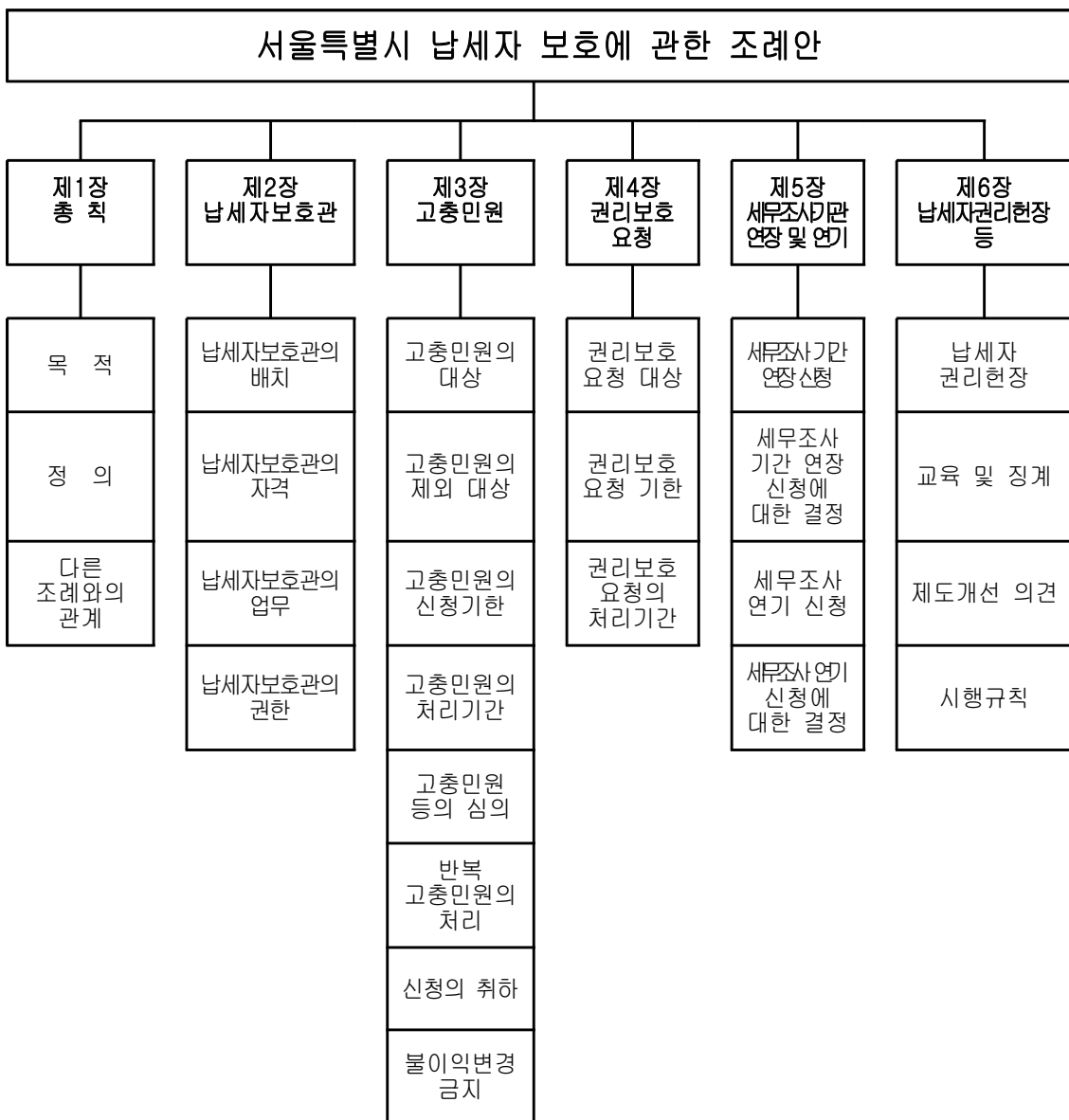
- (배치부서) 납세자보호관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세무부서 외 국민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업무분장 중 소송사무, 행정심판, 법률지원 등의 기능을 하는 부서에 배치

-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만 납세자보호관 설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임.

##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제정안은 6개의 장과 2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의 체계〉



## (1) 총칙(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조문체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과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 (정의)	-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 “고충민원”이란 시세와 관련해 처분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함 -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 완료 전 세무조사 등의 시세 행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관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함 - “세무부서”란 시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함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 적용함

- 안 제2조의 정의 중 “고충민원”은 작위(作爲)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와 피해뿐만 아니라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부작위(不作爲)로 인한 피해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바, 위법·부당한 납세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권리보호요청”의 정의에서는 세무조사 등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될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



- 그러나 처분의 행위주체와 권리침해 행위의 유형이 불분명하고, 권리 보호요청권자로 납세자만 명시하여 세무대리인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타 시·도의 입법사례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하 “표준안”)과 같이 ‘납세자 (세무대리인을 포함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수정의견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권리보호요청”이란 <u>처분이</u> 완료되기 전 세무조사 등의 시세 행정 과정에서 <u>납세자의 권리가</u>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u>납세자</u> 가 납세자보호관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생략)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제정안과 같음) 3. “권리보호요청”이란 <u>세무부서의 처분이</u> 완료되기 전 세무조사 등의 시세 행정 과정에서 <u>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u>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u>납세자 (세무대리인을 포함한다)</u> 가 납세자보호관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정안과 같음)

## (2) 납세자보호관(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자격, 업무,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조문체계		주요 내용
제2장 납세자 보호관	제4조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둬 - 납세자보호관은 시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부서에 둬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 서울시공무원 중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4급 또는 5급 공무원

조문체계		주요 내용
	자격)	-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 징계요구 중이거나 징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임명불가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시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 권리현장의 제·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시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
	제7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또는 중지요구 -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 1) 납세자보호관 배치부서의 명확화 필요(안 제4조제2항)

- 안 제4조제2항은 “납세자보호관을 시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부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과세부서와 납세자가 과세처분이나 세무조사 등으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에게 보다 중립적인 지위를 보장하려는 취지임.
- 다만,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은 이를 보다 명확히 하여 설치부서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명확성 확보 차원에서 납세자보호관의 배치부서를 “법무업무” 담당 부서로 지정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수정의견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둔다. ② <u>납세자보호관은 시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부서에 둔다.</u>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둔다. ② <u>납세자보호관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u>

## 2)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안 제5조)

- 안 제5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요건으로 ▶공무원 중 지방세관련 업무 경력 7년 이상 4급 또는 5급 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있음.
- 서울시는 법무담당관이 납세자보호관을 겸직하면서 실무인력 2명(임기제 6급 변호사, 세무6급)이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지원할 계획임.
- 그러나 제정안의 공무원 자격요건에 현 법무담당관은 재직기간(2018.11~) 이나 전문분야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외부 세무전문인력을 위촉 하거나 내부 세무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이유로 타 시·도에서는 법무담당관(4급)이 아닌 부서소속 5급 세무직을 ‘납세자보호관’으로 두고 있는 실정임[참고자료1].

### 3)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미반영

- 표준안은 시세와 관련해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표준안	제정안
제8조(지도·감독) 납세자보호관은 시세 관련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하여 구군 납세자보호관을 지도·감독한다.	해당 규정 없음

-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세의 부과·징수는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sup>2)</sup>로, 시·도의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67조제2항)에서 지도·감독 권한<sup>3)</sup>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중복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임.
- 그러나 광역세에 있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업무연계성이 밀접하고,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제주·세종 제외)가 광역세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납세자 보호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치구 납세자

2)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세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지방자치법」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보호관에 대한 서울시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sup>4)</sup>).

### (3) 고충민원(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

- 안 제8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고충민원의 대상과 제외대상, 신청기간과 처리기간, 고충민원의 심의와 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신청된 민원의 취하와 고충민원 처리시의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조문체계		주요 내용
제3장 고충민원	제8조 (고충민원의 대상)	- 고충민원의 대상을 규정함 1. 시장이 결정·처분한 경우 2. 내용이 유사한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고충민원의 제외 대상)	- 고충민원 제외대상을 열거함.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으로 함.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시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정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 고충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이 접수된 경우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함
	제10조 (고충민원의)	- 고충민원은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해야함.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내용이 포함된 고충민원은

4)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시와 제주도 외에는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조례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음.

조문체계		주요 내용
	신청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가능함
	제11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해야 함 - 사실 확인, 위원회의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제12조 (고충민원 등의 심의)	-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서울시지방 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1. 고충민원의 대상이 되는 세액이 영 제64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3조 (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 동일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 신청시 민원인에게 처리 제외 통보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없이 종결 - 반복 신청된 고충민원이 당초 민원과 주된 사유가 다르고, 당초 민원에 대한 추가 증거 등을 제출할 경우 새로운 민원 으로 보고 처리해야함 - 동일한 고충민원이 2개 이상 중앙행정기관, 다른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이송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
	제14조 (신청의 취하)	-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음
	제15조 (불이익변경금지)	- 고충민원 처리시 고충민원 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해서는 안됨

## 1) 고충민원의 대상 추가 필요(안 제8조)

- 안 제8조는 고충민원의 대상을 ▶시장이 결정·처분한 경우, ▶내용이 유사한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표준안은 고충민원의 대상을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으로 규정하고, 고충민원의 분류로 “시세 관련 구·군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나 제정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자치구로 위임된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시의 고충민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제정안	수정의견
제8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결정·처분한 경우 2. 내용이 유사한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u>3.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제8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결정·처분한 경우 2. 내용이 유사한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u>3. 시세 관련 자치구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u> <u>4.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 2) 고충민원의 신청기한(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종료(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멸시효기한 종료일)되기 90일 전까지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세 부과 제척기한(「지방세기본법」 제38조)

- ▶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 10년
-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 ▶ 다음의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0년
  -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 ▶ 그 밖의 경우 : 5년

- 그런데 국세의 경우 고충민원의 신청기한은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로 정하고 있어 지방세보다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의 폭이 넓음.(「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6조)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6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세무관서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국세와 지방세의 고충민원 신청기한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국세 관련 규정을 준용해 제척기간 종료 30일까지로 확대해야 할 것임.



제정안	수정의견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 고충민원은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b>90일 전</b> 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내용이 포함된 고충민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 시효기간 종료일 <b>90일 전</b> 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 고충민원은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b>30일 전</b> 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내용이 포함된 고충민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 시효기간 종료일 <b>30일 전</b> 까지 신청할 수 있다.

### 3)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14일(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처리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사실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우면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법·부당한 지방세 납부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확인과 권리구제가 관건인 만큼, 조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하루라도 빨리 안내하는 것이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게 됨.
- 그런데, 국세의 고충민원 처리기간은 연장을 하더라도 접수일로부터 최대 3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방세의 권리구제 시일이 국세에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세무관서간 의견 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인하는데 있어 국세보다 지방세의 처리기한이 더 소요되어야 하는 합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한 확인조사와 처리를 위해서는 국세 기준에 준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수정의견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의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u>30일의 범위에서</u>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의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u>접수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에서</u>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4) 반복 고충민원 처리 관련(안 제13조제2항)

- 안 제13조제2항은 반복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반복 신청한 고충민원이 당초 민원과 주된 사유가 다르고, 당초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표준안과 국세청의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고충민원으로 처리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표준안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7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u>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u> ③ (생략)	제18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청구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u>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u> ③ (생략)

-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5)에서 동일민원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근거로 시세의 민원에 대해서도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임.
- 그러나 동일민원의 여부를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 바, 집행기관의 재량권을 부여하기 보다는 표준안과 국제 기준에 맞춰 강행규정화 하여 재량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정안	수정의견
제13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신청한 고충민원이 당초 신청한 민원과 주된 사유가 다르고, 당초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새로운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u> ③ (생략)	제13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신청한 고충민원이 당초 신청한 민원과 주된 사유가 다르고, 당초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새로운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u> ③ (제정안과 같음)

## 5)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정하고 있음.
- 이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보다 불리하게 형을 선고 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68조를 준용한 것으로, 이 원칙은 국세기본법과 고충민원의 처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국세기본법」

제65조의3(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 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0조(불이익변경금지) 세무관서장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신청 전보다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

- 현행법에서 이 원칙을 인정하는 이유는 불복신청이나 고충민원을 제기한 결과로서 종전의 판결(판단)보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를 하게 되면 권리구제 자체를 포기하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서도 관계 법률의 입법취지와 체계에 맞춰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4) 권리보호요청(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

-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요청의 대상, 기한,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조문체계		주요 내용
제4장 권리보호 요청	제16조 (권리보호요청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리보호요청의 대상</li> <li>1. 세무조사 진행 중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li> <li>나.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하는 행위</li> <li>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li> <li>라.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li> </ul> </li> <li>2. 시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및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li> </ul> </li> </ul>

조문체계		주요 내용
		<p>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p> <p>나. 관계 법령의 근거없이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p> <p>다.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p> <p>라.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p> <p>마.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p> <p>3.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p>
	제17조 (권리보호요청 기한)	-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징수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18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이내에

- 안 제16조는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을 ‘세무조사’와 ‘시세 부과·징수, 체납 처분 등’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할 경우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행위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표준안과 같이 행위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수정의견
제16조(권리보호요청 대상)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세무조사 진행중에 발생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u> 가.~라. (생략) 2. <u>시세 부과 징수,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u> 가.~마. (생략)	제16조(권리보호요청 대상)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세무조사 진행중에 발생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u> 가.~라. (제정안과 같음) 2. <u>시세 부과 징수,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u> 가.~마. (제정안과 같음)

- 안 제17조는 권리보호요청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전까지”로 정하고 있음.
- 이는 국세와 표준안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보다 확장된 것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당한 권리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됨.

#### (5) 세무조사 기간 연장 대상 확대 및 연기(안 제19조부터 안 제22조까지)

- 안 제19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 신청,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 연기 신청,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을 규정하고 있음.

조문체계		주요 내용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9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 세무부서장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 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일 3일전까지 기간연장신청을 해야함 -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일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해야함. 다만, 지방세 범칙조사는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조문체계		주요 내용
	제20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	-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해야함 - 세무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결정 전에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제21조 (세무조사 연기 신청)	-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하려면 세무조사 개시일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해야함
	제22조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	-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기여부를 결정해야함 - 세무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결정 전에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없음

- 이들 규정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안으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안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음.

## (6) 납세자 권리헌장 등(안 제23조부터 안 제26조까지)

- 안 제23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납세자 권리헌장의 고시·공지 의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납세자 권리헌장과 납세자 권리보호의 교육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조문체계		주요 내용
제6장 납세자 권리헌장 등	제23조 (납세자 권리헌장)	- 시장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어야 함 - 시장은 납세자 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제24조 (교육 및 징계)	-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납세자 권리헌장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시장은 법령 등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조문체계		주요 내용
	제25조 (제도개선 의견)	-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 개정을 건의할 수 있음 - 납세자보호관은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해야함
	제26조 (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납세자 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헌장 그 자체가 법률적 효력을 지니지는 못하지만 세무부서가 스스로 숭선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신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우리나라는 1996년 국세기본법에 ‘납세자의 권리’라는 독립된 장이 신설되고 국세청장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도록 명문화하면서 제도가 도입됐음.
- 납세자 권리헌장에는 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비밀유지,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이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나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등을 하는 경우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 권리헌장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함.

## 라. 종합의견

- 제정안은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바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자격, 업무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 지방세(시세)와 관련하여 세무부서(장)에서 처분한 사항이 위법·부당하거나, 납세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공감할 수 있음.
- 또한 조세에 관한 고충민원은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긴급성과 신속한 제도시행이 요구되는 입법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이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있는 바, 별도의 전담부서 없이 법무담당관이 납세자보호관을 겸직하고 있고, 실무인력 2명으로 납세자의 권리보장과 민원해결 등이 가능할지 의문시됨.
- 이밖에도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명시, 고충민원의 대상 추가, 고충민원 신청기한과 처리기간을 국세 기준에 준하도록 수정해야 할 것이며, 권리보호요청 시 위법·부당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정안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규정한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의 공개 의무와 관련된 조항<sup>6)</sup>이 누락되어 있어 서울시 실정에 맞춰 조례에 반영토록 보완되어야 할 것임.

---

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자격 등) ①~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수정안요지

### 가. 수정이유

-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고충민원의 대상을 추가하며, 고충민원 신청기한과 처리기간을 국세에 준하도록 수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시 위법·부당행위의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함.

###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1) 권리보호요청의 처분주체와 납세자 권리의 침해유형을 명확히 하고, 권리보호요청의 행위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2) 납세자보호관의 배치부서를 명확히 함(안 제4조).
- (3)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추가함(안 제7조)
- (4) 고충민원의 대상에 시세와 관련된 자치구 고충민원 처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8조)
- (5) 고충민원의 신청기한을 각각 ‘9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함(안 제10조)
- (6)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에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로 함(안 제11조)

(7) 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기준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함  
(안 제13조)

(8) 권리보호요청 대상이 되는 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16조)

(9) '초일'을 '첫날'로 수정함(안 제18조)

##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126
----------	------------

제안년월일 : 2019년 12월 17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고충민원의 대상을 추가하며, 고충민원 신청기한과 처리기간을 국세에 준하도록 수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시 위법·부당행위의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권리보호요청의 처분주체와 납세자 권리의 침해유형을 명확히 하고, 권리보호요청의 행위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나. 납세자보호관의 배치부서를 명확히 함(안 제4조).
- 다.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추가함(안 제7조).

- 라. 고충민원의 대상에 시세와 관련된 자치구 고충민원 처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8조).
- 마. 고충민원의 신청기한을 각각 '9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함(안 제10조).
- 바.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에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로 함(안 제11조).
- 사. 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기준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함(안 제13조).
- 아. 권리보호요청 대상이 되는 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16조).
- 자. '초일'을 '첫날'로 수정함(안 제18조)

#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제3호 중 “처분이”를 “시세 관련 처분”으로 하고, “납세자의 권리가”를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로 하며, “납세자”를 “납세자(세무대리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납세자보호관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안 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시세 관련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한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감독

안 제8조제3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시세 관련 자치구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4.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 제10조 중 전단의 “90일 전”을 “30일 전”으로 하고, 단서의 “90일 전”을 “30일 전”으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초일”을 “첫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일의 범



위에서”를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로 한다.

안 제13조제2항 중 “새로운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를 “새로운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로 한다.

안 제16조제1호의 본문 중 “해당하는 행위”를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본문 중 “해당하는 행위”를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로 한다.

안 제18조 중 “초일”을 “첫날”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권리보호요청”이란 <u>처분이</u> 완료되기 전 세무조사 등의 시세 행정 과정에서 <u>납세자의 권리</u>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u>납세자</u>가 납세자보호관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p> <p>4. (생략)</p> <p>② (생략)</p> <p>제4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생략)</p> <p>② <u>납세자보호관은 시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부서에 둔다.</u></p> <p>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 및 자치구의 세무부서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p> <p>1. ~ 5.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8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u>3.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p>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제정안과 같음)</p> <p>3. “권리보호요청”이란 <u>시세 관련 처분이</u> 완료되기 전 세무조사 등의 시세 행정 과정에서 <u>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u>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u>납세자(세무대리인을 포함한다)</u>가 납세자보호관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p> <p>4. (제정안과 같음)</p>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4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u>납세자보호관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u></p> <p>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 및 자치구의 세무부서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p> <p>1. ~ 5. (제정안과 같음)</p> <p><u>6. 시세 관련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한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감독</u></p> <p>제8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제정안과 같음)</p> <p><u>3. 시세 관련 자치구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u></p> <p><u>4.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p>

제정안	수정안
<p>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 고충민원은 지방세 부과 의 제척기간 종료일 <b>90일 전</b>까지 신청하여야 한 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내용이 포함된 고충 민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기간 종료일 <b>90일 전</b>까지 신청할 수 있다.</p> <p>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 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b>초일</b>은 산입하되, 공 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 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의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b>30일의 범위에서</b>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13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신청한 고충 민원이 당초 신청한 민원과 주된 사유가 다르고, 당초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추가하여 제 출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b>새로운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b></p> <p>③ (생략)</p> <p>제16조(권리보호요청 대상) 권리보호요청의 대상 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세무조사 진행중에 발생한 다음 각 목에 <b>해당하는 행위</b> 가. ~ 라. (생략)</p> <p>2. 시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다 음 각 목에 <b>해당하는 행위</b> 가. ~ 마. (생략)</p> <p>3. (생략)</p> <p>제1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시장은 권리보 호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b>초일</b>은 산입하되,</p>	<p>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 고충민원은 지방세 부 과 의 제척기간 종료일 <b>30일 전</b>까지 신청하여야 한 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내용이 포함된 고충 민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기간 종료일 <b>30일 전</b>까지 신청할 수 있다.</p> <p>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 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b>첫날</b>은 산입하되, 공 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 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의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b>접수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 위에서</b>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13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신청한 고충 민원이 당초 신청한 민원과 주된 사유가 다르고, 당초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추가하여 제 출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b>새로운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b></p> <p>③ (제정안과 같음)</p> <p>제16조(권리보호요청 대상) 권리보호요청의 대상 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세무조사 진행중에 발생한 다음 각 목에 <b>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b> 가. ~ 라. (제정안과 같음)</p> <p>2. 시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다 음 각 목에 <b>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b> 가. ~ 마. (제정안과 같음)</p> <p>3. (제정안과 같음)</p> <p>제1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시장은 권리보 호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b>첫날</b>은 산입하되,</p>

제정안	수정안
<p>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p>	<p>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p>

##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과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관련하여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권리보호요청”이란 시세 관련 처분이 완료되기 전 세무조사 등의 시세 행정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납세자보호관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세무부서”란 시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방세 관련 업무경력이 7년 이상 근무한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를 받아 「지

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 권리현장의 제·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시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 및 자치구의 세무부서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또는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6. 시세 관련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한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감독

### 제3장 고충민원

제8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결정·처분한 경우
2. 내용이 유사한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세 관련 자치구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고충민원의 제외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시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이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 고충민원은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내용이 포함된 고충민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의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치,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고충민원 등의 심의)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부서의 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대상이 되는 세액이 영 제64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3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신청한 고충민원이 당초 신청한 민원과 주된 사유가 다르고, 당초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장 권리보호요청

제16조(권리보호요청 대상)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무조사 진행 중에 발생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 가.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나.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 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 라.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
  - 가.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및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나.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시세 관계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 다.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

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라.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마.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17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징수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1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시장은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9조(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①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제

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일 3일(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일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사기간 연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세무조사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21조(세무조사 연기 신청)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하려면 세무조사 개시일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1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기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

## 제6장 납세자 권리헌장 등

제23조(납세자 권리헌장) ①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납세자 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 및 징계)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납세자 권리헌장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령 등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